









## 문 25.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회사무총장의 부작위에 대한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은 각각 국회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이다.
- ②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기관은 그것이 위법·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- ③ 원자력법상 시설부지 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없다.
- ④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(訴)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처분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상이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.
- ⑤ 취소소송에서 잠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.